

2021년 공공 빅데이터 분석 청년인재 양성

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

2021.7

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유재신 책임연구원

3단비교표 (법률-시행령-시행규칙)

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[법률 제17370호, 2020. 6. 9., 제정]	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 제31226호, 2020. 12. 8., 제정]	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행정안전부령 제216호, 2020. 12. 10., 제정]
제1장 총칙		
제1조(목적)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,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데이터"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. 2. "데이터기반행정"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·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·저장·가공·분석·표현하는 등(이하 "분석등"이라 한다)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. 3. "공공기관"이란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그소속 기관,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 가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	제2조(공공기관의 범위)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다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·기관 및 단체" 란다음 각 호의 법인·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. 1.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	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		

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·개발 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③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최신성 · 정확성 및 상호연계 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④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제공,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.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⑤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제4조(다른 번륰과의 관계) ①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 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②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의 수 집 ·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에 따른다. 제2장 추진 체계 |제5조(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) ① 데이터기반행|제3조(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.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1. 기획재정부, 교육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행정안 1.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, 제도 및 법령의 개선 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 2. 제6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부. 보건복지부, 환경부,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, 해양 수립 • 변경 수산부, 중소벤처기업부 및 통계청 3. 제13조에 따른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2. 「지방자치법」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 4.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데이터 분석 자치단체의 장의 전국적 협의체가 특별시·광역시·특 등이 필요한 사항 별자치시・도・특별자치도(이하 "시・도"라 한다) 중 5.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에서 추천하는 2개의 시·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. 「지방자치법」 제1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자치단체의 장의 전국적 협의체가 시·군·구(자치구를

말한다. 이하 같다) 중에서 추천하는 2개의 시·군·구

4.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

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

위촉하고, 위원장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위촉 공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법의 운용과 밀접한 되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.
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②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또는 데이터 분 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석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임직원
- |석등 관련 연구소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|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(직무등급이 가|
- 3. 데이터 분석등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) 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
- 4. 데이터 분석등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|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|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
- 6. 그 밖에 데이터 분석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졌다|위촉하는 경우에는 전문분야, 성별 및 나이를 고려해야 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사람
- |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|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(이하 "위원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장"이라 한다)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|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 또는 데|무를 대행한다. |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|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| |터 의겨을 들을 수 있고,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|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위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|의(開議)하고.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|치를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|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야 한다.
- ⑦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|하게 할 수 있다.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|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|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2개의 공공기관
- 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.
- 2.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또는 5년 이상 데이터 분 1.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: 해당 중앙행정기관
 - 2.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기과: 해당 지
 - 3. 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: 해당 공공기관의 장
- 5. 판사,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🛛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하다
- ④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④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
 - 소집한다.
-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
 -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
- |**제4조(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** ① 위원회는 법 제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법 제13조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 정을 위한 분과위원회(이하 "조정지원분과위원회"라 하다)

2.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

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고. 분과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분과위 |원장"이라 한다)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(互 選)하다

③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출석수당 등)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 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 만.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 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 는다.

제6조(위원회 등의 운영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|제6조(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) ① 행정안전부|제7조(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) 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한다.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①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을 말한다.
- 1.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 런된 사항
- 2.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

- 1.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한 사항
- 3.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대책
- 구축
- 이력 양성
- 달 계획
- 7.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거쳐 확정한다. 사항
- |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.|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 |기본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 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2. 데이터기반햇정 활성화와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 ② 중앙햇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 6조제4항에 따라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을 통보받은 경 4. 데이터의 연계·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체계 우에는 그 작성 지침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데 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 5. 데이터의 연계·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전문|획"이라 한다) 시행기간에 추진할 부문계획을 작성하 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6. 데이터기반햇정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 ③ 햇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문계 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계획|획이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

- |제7조(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) ① 중앙행정기│제8조(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) 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l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 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 계획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활성화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해」야 한다. |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│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다 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 른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
- 2.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계획

- 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

- 3.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
- 4.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
- 5.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 · 협력 방안
- 6.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데이터의 등록 및 제공 절차 등

- |**제8조(데이터의 등록 등)**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|**제9조(데이터의 조사 및 등록 요청 등)** ① 행정안전부 호의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데이터(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 터는 제외한다)를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 랫폼(이하 "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"이라 한다)에 등록할 수 있다.
- 1.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 사회적 문제 등 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
- 2. 특정 계층 · 지역 · 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 가 필요한 분야
- 3. 안전사고,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 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
- 4. 정치적 · 경제적 · 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 |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
- 5.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 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의 원활한 공동활용을 위 |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되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|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.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여러 기관이 공동활용할 필요가

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- 1. 정기조사: 기본계획 수립년도에 실시하는 조사
- 2. 수시조사: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해당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 리 플랫폼(이하 "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"이라 한다) 에 등록해야 한다. 다만. 기술적 재정적 사유 등 부득 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의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 · 재정적 ·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있는 데이터를 조사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해당 데이터 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조사 기준과 절차ㆍ방법 및 데이터의 등록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|제9조(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·활용) ① 공공기관의|제10조(등록된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) 장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플랫폼을 통하여 수집·활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플랫폼을 통하여 데이터를 등록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데이터를 수집 ·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통합관리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신청을 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데이터를 수집 •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 • 활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 수해야 한다.

1. 데이터를 수집·활용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게 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

2. 보유기간의 경과,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 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할 것

3. 데이터가 위조·변조·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

|제10조(데이터의 제공 요청)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|제11조(데이터의 제공 결정) ①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|제2조(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공 등) ① 공공기관의 조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이용 목적, 분석 방법 및 이용 기간 등을 명

(이하 "보유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공공기관(이하 "요청기관"이 라 한다)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② 보유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관"이라 한다)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장은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 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데이 터 제공 요청서를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(이하 "보유 시한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하여야 한다.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기간 내에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② 보유기관의 장은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요청 방법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법률 시햇렷」(이하 "엿"이라 한다) 제11조제2항에 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연장 사유 및 연따라 데이터의 제공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장 기간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-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공 요청을 받은 데이터가 법 연장 통보서를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공공기관(이하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"요청기관" 이라 한다)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.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거부 결정의 내용과 ③ 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 |사유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술적 분리 가능 여부|의 제공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데이| 에 대한 검토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.
- 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경우에는 데이터통|통보서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. 합과리 플랫폼에 해당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기간

터 제공 결정 통보서를 데이터 제공 거부를 결정하였 ④ 햇젓안전부장관은 보유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2)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

|**제11조(데이터의 제공 범위)**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0|**제12조(데이터의 기술적 분리·제공)** 공공기관의 장이 조제1항에 따라 제공 요청을 받은 데이터가 해당 공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 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인 경 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1. 데이터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(대통령령 및 조례만 해당한다)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
- 2.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 |한 데이터로서 이를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|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. 다른 법령에 따라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이 제한 되거나 금지되는 경우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 때에 는 그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.

|**제12조(데이터의 제공 결정 등)** ① 제10조제1항에 때|**제13조(데이터 제공 비용부담의 대상·범위 등)** 보유| 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데 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- ②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하였을 때 1. 데이터의 제공에 필요한 전자기록매체 비용 |에는 지체 없이 그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| 2. 데이터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정보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고, 데이터 제공 거부를 결정하였 통신망의 증설·유지보수 비용 을 때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 3. 데이터의 가공에 필요한 비용 게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는 당한 권리이용 비용 경우에는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데이터 제 5. 그 밖에 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유기관의 장 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과 요청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비용
- ④ 제3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대상·범위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|제13조(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) ① 제12조제|제14조(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) ①|제3조(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) ① 법 제12조 요청할 수 있다.
- 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정요청"이라 한다)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 사유가 없으면 그 조정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 한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, 합의가 이 정하다.

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 이터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제3항에 따라 요청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- 4.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

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 통보를 받은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위원회에 제공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서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청(이하 "조 자 간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.

>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권고 후 당사자 간에 합의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요청에 대한 결과를 청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. 확정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 항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데이터의 제공 거 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데 이터 제공 거부 조정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조정 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정 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 결과 통보서를 요

해당 민간법인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법인등이 데이터의 제공・연계 또는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데이터기반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공공기관을 대표하여 민간법인등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제15조(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) ① 공공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법인·단체 또는 개인 등(이하 "민간법인등"이라 한다)과 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 1. 데이터의 이용 목적 2. 제공 대상 데이터의 항목 3. 데이터의 이용기간 4. 데이터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.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민간법인등의 데이터를 구매하는 경우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있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	
	미리 협의해야 한다.	
제15조(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) ①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데이터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 ②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보유기간의 경과,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하여야 하며,데이터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③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제공받은 데이터가위조·변조·훼손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		
제4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		
제16조(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) ① 공공기관의 장은 지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	대16조(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) ① 공공기 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메 타데이터(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, 속성, 특성, 이력 등을	

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(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. 이하 같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축·운영할 수 있다. 위하여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통합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 | 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・운영 등에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현한 자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데이터관계도(데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데이터관계도 다)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

•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체계를 구축 •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관별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종합하여 데이터 소관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

>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제2 항에 따라 통합 • 연계하여 관리하는 메타데이터 및 데 이터관계도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할 수 있다.

>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 터관리체계의 구축 ·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7조(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 · 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데이터기반행정과 관 려된 사항이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데이터 분석등의 절차 및 방법
- 2. 메타데이터의 관리 방법
- 3.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.
- 1.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·연구 및 개발
- 2. 데이터기반행정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 유지·강화
- 3.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의 |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|제18조(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|제17조(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) 행정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 · 연계 및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데이 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 · 운영하여야 한다.

- 1.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
- 2. 데이터관계도 등 연관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탐색
- 3. 데이터 유형별 저장 체계
- 4.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ㆍ의사결정 지원 및 이력 관리
- 5.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 관리되는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
- 6. 그 밖에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구축 •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 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그 밖에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|제19조(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) ① 공공기관의 장은|제18조(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등) ① 공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총괄하는 책임관(이하 "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"이 라 한다)을 임명하여야 한다.

-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 기반행정 책임관"이라 한다)으로 임명해야 한다. 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- 2.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
- 업무 총괄 및 지위
- 4.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

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구축 •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데이터통합과리 플랫폼에 연계·통합하기 위하여 필 요한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구분에 따른 사람을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 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(이하 "데이터

- 1. 중앙행정기관: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1.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원(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) 2. 시·도 및 시·도 교육청: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워
- 3.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 3. 시・군・구: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4. 그 밖의 공공기관: 해당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 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, 다만, 데이터기반

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.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 여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 운영할 수 있다. |제20조(데이터분석센터)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|제19조(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 참여 등) ① 햇정안 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정부통합데이터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분 분석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석센터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 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 참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하는 협의체를 구성 • 운영할 수 있다.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행정안전 는 사항에 관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(이[|]부장관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 · 저장 · 가공 · 분석 · 표현 등(이하 |하 "통합분석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1. 여러 기관과 관련된 주요 현안의 해결 및 국정과 "분석등"이라 한다)에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공 제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등이 필동참여의 방식 및 기간 등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행 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. 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 분석등에 데이터를 제공 2. 공공기관 간 데이터 분석등의 협업이 필요하여 통 한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3. 공공기관이 소관 분야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통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공동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. 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4. 그 밖에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 |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|당하는 경우 관련 공공기관에 소관 데이터(제11조제1 |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)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으며,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④ 제3항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 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 분석등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.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분석센터의 데이터 분석등

- 의 결과를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|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를 소 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⑥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에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.
- ⑦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분석센 터 및 통합분석센터 내에 수집되거나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결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⑧ 그 밖에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은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기 반행정 전문기관(이하 "전문기관"이라 하다)을 지 음 각 호와 같다. 정할 수 있다.
-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, 제도 및 기 2.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, 조직 및 술의 조사・연구
- 2.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통계의 조사·분석
- 3.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등 지원 |컨설팅ㆍ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
- 4.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 등 록 ·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지원
- 5.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지원
-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야 하다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

|제21조(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) ① 행정안전부장관|제20조(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

- 등)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전문 기관(이하 "전문기관"이라 한다)의 지정 요건은 다
- 1.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공기관일 것
-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
- 3.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·연구·
-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 6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 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

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- 3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
- 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 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⑥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,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, 데이터 연계 • 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 고.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종 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성이 제공 실태 |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부서, 공무원·직원 등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고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.

|제22조(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) ① 공공기|제21조(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) ① 공공 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
- 1. 법 제8조에 따른 데이터 등록 실태
- 2.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된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실태
- 3.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
- 4. 법 제15조에 따른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실태
- 5. 법 제16조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관리 실태
- 6. 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 •운영 실태
- 7.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을 위하여 행정 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 할 수 있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 은 자체 점검 결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개

	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	
	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	
	제22조(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	
	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	
	□ 웹 제22조제3왕에 따른 표정 및 포장님의 시급 내장 □ 을 선정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문가로	
	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창 및 포상금의	
	지급 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	
	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	
제23조(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·보급 등) ①	제23조(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	
	차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데	
고 홍보할 수 있으며, 우수사례가 보급・확산될 수	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할 때에는 공모 등의	
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.	
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	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	
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	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	
정한다.	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.	
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		
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		
할 수 있다.		
1.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		
2.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		
3. 데이터 활용 관련 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제도의		
정착 지원		
4.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		
5.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		
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		
터 관련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힌		
경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.		
경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. ③ 그 밖에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		
경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.		
경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. ③ 그 밖에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		

제25조(민간 및 국제 협력)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 정 활성화 등과 관련한 민간 및 국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 지원
- 2.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문기술의 조사 및 연구
- 3.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
- 4.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부칙 <제17370호. 2020. 6. 9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**제1조**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터 시행한다.

|제2조(최초 기본계획 수립 시기 등에 관한 특례) 행정|**제2조**(최초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) 제8조에도 불 안전부장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이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까 있다. 지로 하다.

|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3 및 제30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.

부칙 <제31226호. 2020. 12. 8.>

하다.

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 의 제출 기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중앙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

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.

부칙 <제216호, 2020, 12, 10.>



감사합니다

문의: yoojs@nia.or.kr